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7360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윤준병 · 임호선 · 임미애  
문금주 · 송옥주 · 이원택  
문대림 · 이정문 · 안도걸  
안호영 · 김 윤 · 박희승  
전용기 · 양문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과 관련하여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 및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현재 중앙회 내부에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

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중앙회·조합 등 일부에만 있어 지주·자회사 등에서 발생한 비위문제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중앙회 운영과 관련된 자금, 보수 등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조합원에 의한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회장·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중앙회 및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선거 관련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대폭 제한함(안 제49조).

나. 1인의 조합원도 조합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5조).

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 보장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

화함(안 제125조의4).

라.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특정 단체위주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위원 등 정부추천위원을 포함하고, 다양한 외부전문가가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5).

마. 중앙회 이사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함(안 제125조의7 신설).

바. 중앙회장 등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 127조의2 신설).

사. 중앙회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시기를 동시조합장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중앙회장 선출 이전 중앙회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선출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함(안 제130조).

아. 중앙회 임직원의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3조의2 신설).

자. 중앙회가 5년마다 농협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조합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점검 및 평가받도록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차.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함(안 제136조의2).

카. 중앙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회원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공개 방법, 예외사유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

3 신설).

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중앙회의 준법감시인 및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1조의2).

파.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합의제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지주·자회사 및 조합등에 대한 감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며, 위원 구성 및 임명 절차, 재원 및 예산·결산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2조부터 제180조까지 신설).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중앙회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1조).

거. 중앙회 및 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 또는 조합 임직원이 주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3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제172조”를 “제192조”로, “4년이”를 “8년이”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제172조제1항제2호”를 “제19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5조제4항 중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를 “지역농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한”을 “공개될 경우 조합의 공동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비공개 결정 등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

⑦ 지역농협은 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차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3조제3호 중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를 “임원의”로 한다.

제125조제4항제10호 중 “감사위원후보자는”을 “감사후보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집행간부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⑧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집행간부가 참여하는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되,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 회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25조의4제2항 중 “감사위원회에”를 “감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의5제1항제3호 중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제12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감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으로,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라. 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제5장제2절에 제1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7(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126조제1항 중 “감사위원 5명을”을 “감사 1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위원장은”을 “감사 1명은”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단서 중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을 “대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9조의 제목 “(감사위원회)”를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사위원회를”을 “감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를 “감사의”로, “감사위원 중 3명은”을 “감사의 요건은”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부전문가는 조합”을 “조합”으로, “감사위원”을 “감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위원은”을 “감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제46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를 “제46조제7항 중”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를 “제46조제8항 중”으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사위원회의”를 “감사의”로 한다.

제13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사위원은”을 “감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회장”을 “회장 및 제3항에 따른 회원조합장인 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회장”을 “회장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로 한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구체적인 선출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1조제4항 중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를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을 “및”으로 한다.

제133조의 제목 중 “다른 직업 종사의”를 “겸직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장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 회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업무 또는 직위에 종사할 수 없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회장은 중앙회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중앙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사업 활성화, 회원조합·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농협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수립한 계획의 확정을 위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 회원, 조합원,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심의위원회에 의해 매년 점검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3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의2 및 제143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3(운영의 공개) ① 중앙회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회원 및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원 및 조합원은 중앙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방법, 시기 및 범위, 공개 예외사유, 이의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1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2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125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 앞의 “제6장 감독”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1절(제162조부터 제16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절 통칙

제162조(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 ①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조합등(이하 “농협계통조직”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계통조직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한다.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163조(사무소) ① 농협감사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4조(정관) ① 농협감사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5조(등기) ① 농협감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장의2제2절(제166조부터 제17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절 구성

제16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농협감사위원회가 아닌 자는 농협감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7조(농협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농협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
2.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3.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1명
5.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농업계 대표 2명

②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융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조합원 및 국민 추천 방식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⑥ 농협감사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68조(직무) ① 위원장은 농협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협 감사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농협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한다.

④ 감사는 농협감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69조(결격사유) 제16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70조(임면)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5장의2제3절(제171조부터 제17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 운영

제171조(겸직의 제한 등) ① 위원장·상임위원·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상임위원·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상임위원·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2조(재원) 농협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

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농협계통조직의 출연금
3. 제173조에 따른 분담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제173조(분담금) ① 농협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농협계통조직(조합 등은 제외)은 분담금을 농협감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협감사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회계) 농협감사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5조(예산과 결산) ① 농협감사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76조(차입) 농협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협계통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장의2제4절(제177조부터 제18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절 업무

제177조(업무) 농협감사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농협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178조(감사 대상 기관 등) ① 농협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등과 그 자회사
2.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손자회사 및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포함)
3. 그 밖에 농협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농협계통조직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 기관별 구체적인 감사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협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감기관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기관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⑤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제182조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농협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제5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제181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83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9조(규칙의 제정) ① 위원장은 농협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8조제1항의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협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77조에 따라 감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 감독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를 각각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로 한다.

제181조(중전의 제162조) 제1항 본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농협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감독상”을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회원·조합원에 대한 공개, 농산물 판매 활성화 의무 및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인, 중앙회와 조합의 운영의 공개와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이행 등을 위해 감독상”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용사업”을 “신용사업,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한다.

제183조(종전의 제16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의”를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협감사위원회의”로,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를 “중앙회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를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 농협감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46조제3항제1호”를 “제178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제18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4조(유죄 판결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조합 등의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제166조부터 제169조까지를 각각 제185조부터 제188조까지로 한다.

제185조(중전의 제166조)제3항 전단 중 “회장”을 “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을 “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회장”을 “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86조(중전의 제167조)제1항제4호 중 “제164조제2항”을 “제18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조 중 “제166조”를 “제185조”로 한다.

제187조(중전의 제168조)제1항 중 “회장”을 “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88조(중전의 제169조) 중 “제167조”를 “186조”로 한다.

제169조의2를 제189조로 한다.

제189조(중전의 제169조의2) 중 “제166조”를 “제185조”로 한다.

제170조부터 제177조까지를 각각 제190조부터 제197조까지로 한다.

제191조(중전의 제171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12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92조(중전의 제172조)제4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때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3조(중전의 제173조) 제1항 제1호 중 “제172조”를 “제192조”로 한다.

제195조(중전의 제175조) 중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 제4항)”을

“제192조에 따른 죄(제194조 제4항)”으로 한다.

제196조(중전의 제176조) 제1항 중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 제4항)”을 “제192조에 따른 죄(제194조 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42조의2부터 제146조까지, 제162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소속 조합감사위원회의 유효기간) 중앙회 소속 조합감사위원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협감사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에

계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비용의 부담) 농협감사위원회 설립비용은 중앙회가 부담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br>-----<br>-----.<br>-----.                                          |
| 1. ~ 7. (생략)                                                                                                                                                         | 1. ~ 7. (헌행과 같음)                                                                             |
|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u>4년이</u>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192조-----<br>-----<br>-----<br>-----<br>-----<br>-----<br>-----<br><u>-8년이-</u><br>----- |
| 9. ~ 12. (생략)                                                                                                                                                        | 9. ~ 12. (헌행과 같음)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헌행과 같음)                                                                               |
|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① (생략)                                                                                                                                              |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① (헌행과 같음)                                                                  |
|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u>제172조제1항제2호</u> (제50조제11                                                                                                          | ② -----<br>-----<br><u>제192조제1항제2호</u> -----                                                 |

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 ③  
(생략)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역농협은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  
-----  
-----  
-----  
-----  
-----  
-----.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농협의-----  
-----  
-----.

⑤ -----  
-----공개될 경우 조합의 공동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  
-----  
-----.

⑥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비공개 결정 등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

<신 설>

⑥ (생 략)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2. (생 략)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5. (생 략)

제125조(이사회) ① ~ ③ (생  
략)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1. ~ 9. (생 략)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서  
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의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정  
관으로 정한다.

⑦ 지역농협은 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를 위해 정보공  
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구  
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등  
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

-----

-----.

1. 2. (현행과 같음)

3. 임원의-----

4. 5.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10. -----

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  
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신 설>

11. ~ 13. (생략)

⑤ ~ ⑦ (생략)

<신 설>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생략)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  
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  
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  
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신 설>

-----감사후보자는-----  
-----

10의2. 집행간부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 1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집행  
간부가 참여하는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되, 경영위원회는 이사  
회에 회의내용을 보고해야 한  
다.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감사에게-----  
-----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을 임  
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  
회를 둔다.

1. 2. (생 략)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  
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  
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  
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생 략)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

립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⑥ 중앙회 및 그 임직원은 준  
법감시인 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  
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  
다.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2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감사

<삭 제>

② -----  
-----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하  
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  
는 4명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③ · ④ (생략)

## <신 설>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  
가 위촉하는-----

-----5명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  
천하는 사람 1명

다.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라. 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7(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을 위  
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126조(임원) ① -----

-----감사 1

원 5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  
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양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  
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  
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양회를 대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  
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  
하는 업무

⑤ (생략)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

명을-----.

② -----

감사 1명은-----.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

-----.

-----대표하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전담대표

이사등의-----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⑦ (생략)

<신설>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

⑦ (현행과 같음)

제127조의2(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9조(감사) ① -----  
-----  
-----감사를-----.  
② 감사의-----  
---감사의 요건은-----  
--정한다. -----조합-----  
-----  
-----감사-----  
-----.

외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② (생략)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

③ 감사는-----  
-----  
-----.

<삭 제>

⑤ -----  
-----  
-----, -----제46  
조제7항 중-----  
-----제46조제8항 중-----  
-----제47조제1  
항-----  
-----제47조제2항-----  
-----  
-.

⑥ 감사의-----  
-----.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된 시·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후단 신설>

④ · ⑤ (생략)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  
조합장선거 실시 후 6개월 이  
내에 실시하며, 구체적인 선출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6)

감사는

⑦ (현행과 같음)

⑧

---

--및 제3항에 따른 회원조합장

인 이사 선출에-----

-----

-----

-----

-----

⑨ · ⑩ (생략)

⑪ 누구든지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생략)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⑤ (생략)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 ⑩ (현행과 같음)

⑪ ----- 회장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  
-----.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  
-----  
-----사업전담  
대표이사등이-----.

⑤ (현행과 같음)

⑥ -----  
및-----  
-----  
-----  
-----  
-----  
-----.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신 설>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  
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  
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신 설>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

제133조(겸직의 제한) ① 회장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 회원의 이  
익 보호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업무 또는 직위에 종사할  
수 없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제133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회장은 중앙회  
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  
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  
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  
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  
킬 수 있다.

제134조(사업) ① -----  
-----

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 바. (생략)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 카. (생략)

2. ~ 9.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 -----  
-----  
-----  
-----  
-----  
-----  
-----  
-----  
-----  
-----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삭제>

아. ~ 카. (현행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4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중앙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사업 활성화, 회원조합·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농협발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수립한 계획의 확정을 위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계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구성·운용) ① 중앙회는 조합  
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차지  
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  
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  
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  
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  
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  
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획 수립을 위해 회원, 조합원,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농  
협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  
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  
관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계획 수  
립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심의위  
원회에 의해 매년 점검과 평가  
를 받아야 한다.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구성·운용) ① -----  
-----  
-----  
-----  
-----  
-----  
-----  
-----  
-----  
-----  
--. 이 경우, 중앙회는 재무건전  
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삭 제>

<삭 제>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삭 제>

<삭 제>

|                                                                                                                                                                                                                                                                                                                 |                           |
|-----------------------------------------------------------------------------------------------------------------------------------------------------------------------------------------------------------------------------------------------------------------------------------------------------------------|---------------------------|
| <p><u>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u></p> <p><u>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u></p> <p><u>3.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u></p> <p><u>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u></p> <p><u>5. 감사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u></p> <p><u>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u></p> <p><u>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                           |
| <p><u>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u></p> <p><u>②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③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u></p>                                                                           | <p><u>&lt;삭 제&gt;</u></p>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장 감독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9조의3(운영의 공개) ① 중앙  
회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회원 및 조합원에게 공개하여  
야 한다.

② 회원 및 조합원은 중앙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방법, 시기 및 범위, 공개 예외  
사유, 이의신청 절차 등 구체적  
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내부통  
제기준 및 준법감시인과 관련  
하여서는 법 제125조의4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추  
천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125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장의3 농협감사위원회

제1절 통칙

제162조(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

①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농

<신 설>

<신 설>

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조합등(이하 “농협계통조직”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계통조직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한다.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163조(사무소) ① 농협감사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4조(정관) ① 농협감사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정관을 변  
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5조(등기) ① 농협감사위원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제2절 구성

제16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농협감사위원회가 아닌 자는  
농협감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7조(농협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농협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

하는 1명

2.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3.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  
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  
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추  
천하는 1명

5.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농업계  
대표 2명

②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위원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융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후보  
자 명단을 조합원 및 국민 추천  
방식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  
다.

⑥ 농협감사위원회에 감사 1명  
을 두며, 감사는 농림축산식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68조(직무) ① 위원장은 농협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협감사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농협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한다.

④ 감사는 농협감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69조(결격사유) 제16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70조(임면)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절 운영

<신 설>

제171조(검직의 제한 등) ① 위원장·상임위원·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상임위원·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상임위원·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2조(재원) 농협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농협계통조직의 출연금
3. 제173조에 따른 분담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신 설>

제173조(분담금) ① 농협감사위원

<신 설>

<신 설>

회의 감사를 받는 농협계통조직 (조합등은 제외)은 분담금을 농협감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협감사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회계) 농협감사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5조(예산과 결산) ① 농협감사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

<신 설>

<신 설>

<신 설>

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  
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  
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  
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76조(차입) 농협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협계통  
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절 업무

제177조(업무) 농협감사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  
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른 제재

<신 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농협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178조(감사 대상 기관 등) ①

농협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등과 그 자회사

2.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손자회사 및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포함)

3. 그 밖에 농협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농협계통 조직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 기관별 구체적인 감사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협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감기관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과 감사에

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기관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⑤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제182조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농협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제5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제181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83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9조(규칙의 제정) ① 위원장은 농협감사위원회의 업무 수

<신 설>

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농협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8조제  
1항의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협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  
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  
다.

② 제177조에 따라 감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장 감독

제181조(감독) ① -----

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농협감사위원회-----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회원·조합원에 대한 공개, 농산물 판매 활성화 의무 및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인, 중앙회와 조합의 운영의 공개와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이행 등을 위해 감독상-----

-----  
신용사업,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② -----  
-----  
-----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

③ -----  
-----  
-----  
-----농협감사위원회

있다.

④ (생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61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3조 (생략)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의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위원장-----.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  
-----.

⑥ -----  
-----  
-----  
-----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

제182조 (현행 제163조와 같음)

제183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협감사위원회의-  
----- 중앙회로  
하여금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  
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  
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  
다.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등이나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  
사, 농협감사위원회의 업무와 회  
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  
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  
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  
의·경고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③ -----  
-----중앙회, 중앙회의 자회  
사, 농협감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  
-----  
-----.

④ -----제178조제4항제1호  
-----  
-----  
-----  
-----  
-----  
-----  
-----.

제184조(유죄 판결 임직원에 대  
한 제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

|                                                                                                                                                                                                                                                                                                      |                                                                                                                                                                                                                                           |
|------------------------------------------------------------------------------------------------------------------------------------------------------------------------------------------------------------------------------------------------------------------------------------------------------|-------------------------------------------------------------------------------------------------------------------------------------------------------------------------------------------------------------------------------------------|
|                                                                                                                                                                                                                                                                                                      | <p><u>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조합 등의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u></p>                                                         |
| <p><u>제166조 (경영지도) ① ~ ② (생략)</u></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u>회장</u>에게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u>회장</u>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p> | <p><u>제185조 (경영지도) ① ~ ② (현행과 같음)</u></p> <p>③ -----<br/>-----<br/>-----<br/>-----<br/>-----<u>농협</u><br/><u>감사위원회위원장</u>-----<br/>-----<br/>-----<br/>-----<br/>-----.</p> <p>④ <u>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u>-----<br/>-----<br/>-----<br/>-----</p> |

게 재산 조회(照會)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  
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4. 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  
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생략)

6. 조합등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  
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  
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  
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

⑧ (현행과 같음)

제186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3조제3항-----  
-----  
-----

5. (현행과 같음)

6. -----  
-----  
-----  
-----

|                                                                                                                                                                                                                                                                                                                                                                                                                                                                                                  |                                                                                                                                                                                                                                                                                                                                                                                                                                                         |
|--------------------------------------------------------------------------------------------------------------------------------------------------------------------------------------------------------------------------------------------------------------------------------------------------------------------------------------------------------------------------------------------------------------------------------------------------------------------------------------------------|---------------------------------------------------------------------------------------------------------------------------------------------------------------------------------------------------------------------------------------------------------------------------------------------------------------------------------------------------------------------------------------------------------------------------------------------------------|
| <p>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7. (생략)</p> <p>② (생략)</p> <p><u>제168조</u>(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u>회장</u>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제169조</u>(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제167조</u>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u>제169조의2</u>(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제166조</u>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p> | <p><u>제185조</u>-----</p> <p>-----</p> <p>-----</p> <p>-----</p> <p>-----</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87조</u>(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① -----</p> <p>-----</p> <p>-----</p> <p>-----</p> <p>-----</p> <p>-----<u>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88조</u>(청문) -----</p> <p>-- <u>제186조</u>-----</p> <p>-----</p> <p>-----</p> <p><u>제189조</u>(규제의 재검토) -----</p> <p>----- <u>제185조</u>-----</p> <p>-----</p> |
|--------------------------------------------------------------------------------------------------------------------------------------------------------------------------------------------------------------------------------------------------------------------------------------------------------------------------------------------------------------------------------------------------------------------------------------------------------------------------------------------------|---------------------------------------------------------------------------------------------------------------------------------------------------------------------------------------------------------------------------------------------------------------------------------------------------------------------------------------------------------------------------------------------------------------------------------------------------------|

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  
검토하여야 한다.

제170조(벌칙) (생략)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  
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  
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략)

<신설>

제172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  
-----.

제190조(벌칙) (현행 제170조와  
같음)

제191조(벌칙) -----  
-----  
-----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127조의2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제19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p>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u>경우</u>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p>                                                                                                                                                                                                                                                                                                                                       | <p>-----.</p> <p>-----</p> <p>-----<u>때와</u></p> <p><u>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u></p> <p><u>따른 죄의 경우에는</u>-----</p> <p>-----.</p>                                                                                                                                                                                                                                                                                      |
| <p><u>제173조</u>(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p> <p>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u>제172조</u>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p> <p>2. (생략)</p> <p>② (생략)</p> <p><u>제174조</u> (생략)</p> <p><u>제175조</u>(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u>제172조</u>에 따른 죄(<u>제174조 제4항</u>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u>제262조의2</u>를 준용한다.</p> <p><u>제176조</u>(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p> | <p><u>제193조</u>(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p> <p>-----</p> <p>-----</p> <p>-----</p> <p>-----.</p> <p>1. ----- <u>제192조</u></p> <p><u>조</u>-----</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94조</u> (현행 <u>제174조</u>와 같음)</p> <p><u>제195조</u>(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u>제192조</u>에 따른 죄(<u>제194조 제4항</u>-----</p> <p>-----</p> <p>-----</p> <p>-----.</p> <p><u>제196조</u>(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p> |

|                                                                                                                                                                                                        |                                                                                                                                                                                             |
|--------------------------------------------------------------------------------------------------------------------------------------------------------------------------------------------------------|---------------------------------------------------------------------------------------------------------------------------------------------------------------------------------------------|
| <p>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u>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u>에 대하여 그 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u> (생략)</p> | <p>포상금 지급) ① -----<br/> ----- <u>제192조에 따른 죄(제194조제4항</u>-----<br/> -----<br/> -----<br/> -----<br/> -----<br/>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9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u> (현행 제177조와 같음)</p> |
|--------------------------------------------------------------------------------------------------------------------------------------------------------------------------------------------------------|---------------------------------------------------------------------------------------------------------------------------------------------------------------------------------------------|